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87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,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0조제9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10조(벌칙)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	
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	<u><삭 제></u>
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	
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	
<u>을 한 자</u>	